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을 구체화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을 “(생태계서비스지불
계약의 체결방법 등)”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으로 하고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을 각각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으로 하고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비보상액”을 “정당한 보상액”으로 하고 “계약하여
야”를 “계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이 필요한 지역) 법 제16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2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4조제2항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지정된 지역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
한 특별대책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제10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 보상)”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비”를 “정당한”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 지원)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국민신탁 활동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존·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은 제외한다)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립공원 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제17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별표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계약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또는 이에 따른 통상의 손실액에 대한 지급을 의미한다.

1. 생물다양성 및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등 지지서비스의 관리와 증진을 위한 활동
 - 가. 휴경(休耕), 무농약 등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및 친환경 작물로 변경을 하는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친환경적 경작 방식으로의 변경 및 작물 변경을 위한 경비를 산정한 금액
 - 나.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의 활동을 위해 수확하지 않는 경우: 수확하지 않은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다.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및 관리 활동의 경우: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 라. 습지 및 생태 웅덩이 등 조성 및 관리 활동의 경우: 습지 및 생태 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2. 수질 및 대기질 정화, 온실가스 저감, 자연재해 완화 등 환경조절서비스의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활동
 - 가. 하천 정화, 식생대 조성 및 관리 등 수질 개선 활동의 경우: 하천 관리, 식생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 나. 식생 군락 조성 및 관리 등 대기질 정화, 온실가스 저감 활동의 경우: 식생 군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 다. 저류지 조성 등 자연재해(홍수, 침식 등) 저감 활동의 경우: 저류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3. 자연경관·자산, 생태관광 등 문화서비스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활동
 - 가. 경관숲, 산책로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식물식재 등을 통해 자연경관을 개선하는 활동의 경우: 경관숲과 산책로 조성 및 관리, 식물 식재 등을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 나. 우수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과 조망축 조성 및 관리 활동의 경우: 조망점·조망축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 다. 자연자산 유지·관리 활동의 경우: 자연자산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반 경비 및 인건비 또는 이에 따른 통상의 손실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9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u>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u>생물다양성관리계약</u>(이하 “<u>생물다양성관리계약</u>”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u>게시하여야</u> 한다. 1. 2. (생 략) ② <u>생물다양성관리계약</u>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물다양성관리계약</u>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u>실비보상액</u>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	<u>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u> ① ----- ----- ----- ----- <u>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u>(이하 “<u>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u>”----- ----- ----- ----- <u>게시해야</u> ----. 1. 2. (현행과 같음) ② <u>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u>--- ----- ----- <u>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u> ----- ----- <u>제출해야</u> ----. ③ ----- ----- ----- <u>정당한 보상액</u> ----- -----

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 계약해야 -----.

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이 필요한 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2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4조제2항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지정된 지역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제10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② ----- 정당한 -----

---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 지원)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국민신탁 활동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법인을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법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해지 및 실비 보상

5. ~ 10. (생략)

② 삭제

③ (생략)

<신설>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은 제외한다)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

한다. <u><신 설></u> <u>1. · 2.</u> (생 략) <u><신 설></u>	---. <u>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u> <u>른 생태계서비스 평가</u> <u>2. ·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u>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u> <u>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국</u> <u>립공원 내 생태계서비스지불제</u> <u>계약의 체결 · 해지 및 정당한</u> <u>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u> <u>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u> <u>공단에 위탁한다.</u>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u>별표</u>와 같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 2</u>---